

일본의 PL제도 해설

제조물책임법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제조물책임제도의 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스몬사건, 카네미유증사건 등의 심각한 위해의 발생 등을 배경으로 하여, 1972년부터 我妻교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연구회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여, 1975년에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공표하였다.

근년에 이르러, 1985년에는『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계되는 법률, 법칙 및 행정규정의 근사화(近似化)에 관한 EC이사회 지령(소위 EC지령)이 나오고, 이것을 받아 구미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에서 제조물책임 입법이 진전되는 한편, 일본내에서도 정당, 학계, 변호사회 등으로 부터 법안과 입법제안등이 잇달아 제출공표되었다.

정부부내에서는 1990년 12월에 발족한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1990년12월-1992년 10월) 및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

부회(1992년 12월-)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외에 관계성청(省廳)에서도 산업구조심의회(1991년 12월-1993년 11월 : 11월5일 총합제품안전소위원회보고, 11월10일 총합제품안전부 답변)을 비롯, 중앙약사심의회(1993년 6월-1993년 11월:10월 19일 제조물 책임제조 등 특별부회 보고, 11월 15일 답변) 식품에 관계되는 소비자피해 방지, 구제대책 연구회(1992년 12월-1993년11월 : 11월 19일 보고)등에서도 소관제품에 관계되는 검토등이 진행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1993년 12월 10일의 국민생활심의회가 내각총리에게 보내는 의견에서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법제화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리되었다.

또, 민사 기본법상의 관점에서는 법제심의회 민법부회 재산법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1993년 10월-1993년 12월) 그 보고(1994년 1월 17일 민법부회 심의결과로서 공표, 2월 16일 총회 승낙)가 공표되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제화에 대해서는『소비

자행정의 추진에 대하여』(1993년 12월 17일 제26회 소비자보호회의 결정),『앞으로 있어서 행정개혁의 추진방책에 대하여』(1994년 2월 15일 각의결정)에도 곁들여졌다.

제조물책임제도의 법제화에 즈음하여, 자민당에서는 경제·불가문제조사회 제조물책임제도에 관한 소위원회를 두어 검토가 이루어졌고, 1991년 10월에『중간 취합』이 공표되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또 연립여당(당시)에서도 1993년 12월 16일 이래 PL법에 관한 연립여당 프로젝트를 두어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1994년 4월4일에는 그 검토결과가 정리되어 시급히 법제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것을 받아,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안을 입안하고(1994년 4월 12일 각의결정),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6월 2일에 중의원 상공위원회에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계되는 피해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넘겨진 후, 소비자문제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와의 연합심사회를 거쳤고, 15일에는 상공위원회에서 채결되었으며, 16일에는 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참의원에서는 17일 본회의에서 취지설명 및 질의가 이루어진 후, 20일부터 상공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22일에는 위원회에서 채결된 후, 본 회의에 긴급 상정되어,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 6월24일의 공포각의를 거쳐, 법률 제85호로서 1994년 7월1일에 공포되었다.

취지

본조는 본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에 있어

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더우기 이로 인하여 달성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서,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내걸고 있다.

조문의 해석

• 『피해자의 보호』의 의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주체는 소비자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소비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 본법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자연인 뿐만아니라, 법인을 포함하는 취지이다.

• 『그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의 의의

본 법의 직접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하에서 말하는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피해자의 보호』을 도모하므로서 달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목적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판장 점의 명확화, 판례수준의 평준화라고 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부터 기업, 소비자, 쌍방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상대방에 대한 충실, 재판 외에 있어서 크레임 처리의 원활화, 더 나아가 국제적으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이 법률에 있어서 「결합」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그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넘긴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계되는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 있어서 「제조업자등」이란,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이하 단순히 「제조업자」라 한다.)
- ②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제조물에 그 氏名, 상호, 상표 그외의 표시(이하 「氏名등의 표시」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에 그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氏名 등의 표시를 한 자
- ③ 전호에 게기하는 자 외에,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형태 그 외의 사정으로 보아,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氏名 등의 표시를 한 자

로 조화가 취해진 제도의 확립 것이다.
이라고 하는 효과를 지칭하고
있다.

성을 덧붙여 가치를 더하는 것」
(동 용어사전)이다.

▣ 조문의 해석

• 「제조 및 가공」의 의의

제조물의 정의(제1항)

취지

제조물책임은 과학기술이 진보하는 중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되는 공업적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이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져 왔다고 하는 배경하에 제품관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과실」에서 「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혁신을 근거로 본법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과 처리가 이루어 족 넘겨진 동산을 대상으로 한

『제조』란 제품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자리가 잡혔으며,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손을 대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른바 제2차산업에 관계되는 생산 행위를 지칭하며 1차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이용되지 아니한다』(법률용어사전 내각 법제국 법령용어 연구회 편)를 나타내고 있다.

또 「가공」이란, 「동산을 재료로하고 이에 공작을 하여, 그 본질은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속

• 「동산」의 의의

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모든 유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어 있지만(민법 85, 86조), 본법에서도 그 내용은 민법의 개념에 따르고 있다.

관련사항

• 제조물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해석

① 미가공 농림축수산물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고도로 가공된

공업제품과는 생산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가공』인지『미가공』인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당해 제조물에 가해진 행위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가공』의 개념에 입각하여 그 몇개를 정리하여 예시하면 가열(졸임, 끓임, 구움), 맛들임(조미, 소금절임, 훈제), 분말만들기, 즙짜기 등은『제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하여, 단순히 절단, 냉동, 냉장, 건조 등은 기본적으로는『제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② 혈액제제 및 생워진

혈액제제 및 생워진은 혈액 또는 바이러스 등에 가공을 가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두 제조물에 포함된다.

(참고)

혈액제제 및 생워진의 결합판단에 대하여

1. 수혈용 혈액제제(전혈제제 및 혈액성분제제를 말한다.)의 결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특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생명의 위기시에 사용되는 것이며, 달리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으면 매우 유용성이 높다.

- 수혈에 의한 바이러스 등의 감염과 면역 등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뜻의 경고표시가 되어 있다.

- 수혈용혈액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급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바이러스감염과 면역반응 등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기술하에서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 등의 혼입과 면역반응 등에 의한 부작용은 결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된다.

2. 또 생워진인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결함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직접적으로 결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3. 중고품

중고품이라도『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제조물이다.

다만, 중고품으로서 매매된 것에 대해서는, i)이전 사용자의 사용상황과 개조·수리의 상황에도 따를 것, ii)중고품판매자에 의한 점검, 수리와 정비 등이 개재

하는 것도 많아, 제조업자의 책임유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된다.

(2)부동산의 사고

본법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에 의한 구제가 원활할 것, 제3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토지공작물책임(민법 717조)에 의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것, 내용년수가 길고, 그 간의 열화와 유지·보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EC제국에서도 부동산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외로 하는 것 등을 참고하여 본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의 한 부분이 된 동산(유리창, 벽지 등)이라도 넘겨진 시점에서 동산인 것은 대상으로 한다.

(3) 무체물의 사고

무체물은 동산에 해당하지만, 본법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기 등의 무형에너지, 소프트웨어 등은 본법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4)『수리』『설치』등의 사고

『수리』와『설치』는 함께 제조물이 넘겨진 후의 문제이고,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낸다든가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고 있다고 는 말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것 이기 때문에『제조 또는 가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합의 정의

취지

본법에 있어서 결합이란, 광의의 하자(민법 570조의 하자담보 책임에서의 하자)에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계되는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게 하는 단순한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는 삼지 아니한다.

조문의 해석

•『당해 제조물의 특성 그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넘긴 시기 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계되는 사정을 고려하여』의 의의

본법에서는 결합개념의 명확화의 요청과 쟁점의 확산(피해자의 입증부담 증가)방지요청과의 조정관점에서 공통성, 중요성, 양 당사자에게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합판단에 임하여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야 하는 고려사항으로서『당해 제조물의 특성』,『그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및 『제조

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넘긴 시기』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본법에서 규정하는 3가지 고려 사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웨이트를 달리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결합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①『당해 제조물의 특성』의 의의

제조물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사정으로『제조물의 표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 등),『제조물의 효용·유용성』(위험과 비교하여 고려한 양),『가격對효과』(같은 가격대의 제조물 안전성의 수준 혹은 합리적인 가격에 의한 대체 설계),『피해 발생의 개연성과 그 정도』,『제조물의 통상사용기간·내용기간』 등을 들 수 있다.

②『그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의 의의

제조물 사용에 있어서의 사정으로,『제조물의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용』,『제조물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발생방지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③『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넘긴 시기』의 의의

넘긴 시기에서의 사정으로,『제조물이 넘겨진 시기』(당해 제조물이 넘겨진 시점의 사회에서 요청된 안전성의 정도 등),『기술적 실현가능성』(안전규제의 상황, 대체설계의 채용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④『기타 당해 제조물에 관계되는 사정』의 의의

기타의 사정으로서는 위험의 명백함(당해 제조물의 사용방법에 관계되는 인식정도 사용자측의 사정), 제품의 얹혀 흘어진 상황, 천재 등의 불가항력인 존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의 의의

본법에 있어서『결합』이, 제조물의 안전성 결여, 즉 당해 제조물의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 이외의 제3자를 포함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가르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관련사항

• 행정상 제품 안전규제와의 관계

행정상의 제품안전규제는, 제품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충족해야 할 최저기준을 정한 단속규정인 동시에, 기업의 제품안전대책과 소비자의 구입·사용에 관계되는 평가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법은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구제를 위한 룰을 정하는 것이며, 제품 안전규제와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자리 를 잡고 있다.

양자는 의의·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며, 행정상의 안전규제에 대한 적합·부적합과 결함의 존재와 제조물책임이 존재하느냐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규제에 대한 적합·부적합은 규제대상제품의 사고에 관계되는 손해배상 소송 시의 결함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안전규제에 관계되는 기술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므로써, 소비자, 사업자 쌍방에 있어서 결함판단의 예견가능성,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안전규제 적합제품에 대해 그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안전규제의 불비와 사고의 원인인 결합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며, 당해 안전규제의 불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1조의 요건이 되는『공권력

행사에 임하는 공무원』의『고의 또는 과실』(행정상 규제권한의 위법인 행사 또는 불행사)이 인정된 때에는 정부는 제조업자 등의 제조물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국가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결함판단의 기준

제조업자 등에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배상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등이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일정한 표시를 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넘겨준 시점(제조업자 등의 지배를 떠난 시점)으로 그 결함(통상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 존재한 것이 필요한 것과 아울러,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 갖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결함부위의 특정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품마다 결함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그 특정의 정도는 제품의 특성도 고려하고, 사회통념상 결함의 존재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주장·입증

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제조업자 등의 의의(제3항)

취지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상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의 전체로서 과실책임에서 결합책임으로 전환의 근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업으로서 제조, 가공 혹은 수입한자 또는 제조물에 일정한 표시를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문의 해석

• 「업으로서」의 의의(제1호)

본 법에 있어서, 책임주체를 「업으로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에 한한다는 것은, 제조물책임이 대량생산·대량소비라고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 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발전해 온 법리에 의거한 것이다.「업으로서」란,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자」의 의의(제1호)

제조업자는 기본적으로 제조물을 업으로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자기의사에 따라 그 제조물을 넘긴 자이며, 책임주체로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또 수입업자는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하여 결합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는 아니하는 것의 그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므로서 국내에 당해 위험을 갖고 들어 온 자 일것, 소비자가 직접 해외제조업자를 제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제조업자와 같이 책임주체로 한다.

• 『스스로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제조물에 그 氏名, 상호, 상표 기타 표시(이하『氏名等의 표시』를 한 자)』의 의의(제2호 전단)

제2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상기(3)에 예시한 것 같은 명칭을 쓰지 아니한 경우라도, 예를 들면 제품에 단순히 브랜드 명을 붙이므로서 사회통념상, 제조업자와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당해 제조물에 그 제조자와 오인할 수 있는 氏名 등의 표시를 한 자』의 의의(제2호 후단)

제2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상기(3)에 예시한 것 같은 명칭을 쓰지 아니한 경우라도 예를 들면 제품에 단순히 브랜드 명을 붙이므로서 사회통념상, 제조업자와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형태 그외의 사정으로 보아 당해 제조물에 그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氏名 등을 표시한 자』의 의의(제3호)

본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상기(3)(4)와는 달리 『판매자 ○○』, 『판매원 ○○』 등의 명칭으로 자기 씨명 등의 표시를 한 경우라도 당해 표시자가 당해 제조물과 동종 제조물의 제조업자로서 사회에 인식되어 있으며, 당해 제조물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본호에 있어서 『당해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형태 …로 보아』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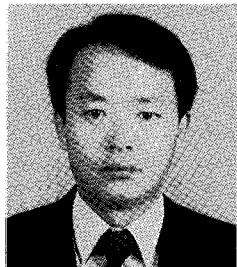
와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최종적인 출하검사를 행하고 있는 것 등의 사정

② 『수입 …에 관계되는 형태』의 의의

동종의 제조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을 것, 수입한 제조물의 작게 나눔·포장등을 하고 있는 것 등의 사정

③ 『판매에 관계되는 형태』의 의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부터 공급을 받아 국내시장에서 단독 판매업자인 것 등의 사정



주현필 선임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